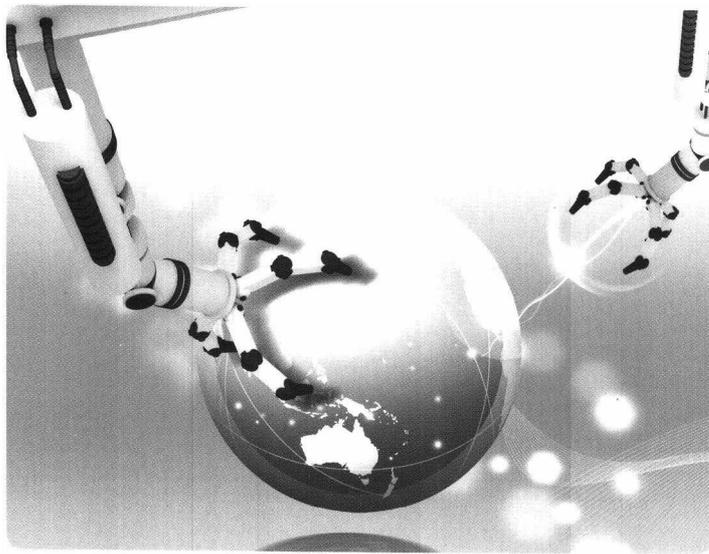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에 따라 개선 ... 수요자 부담 경감 초점

신기술(NET) 인증제도 개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으로 신기술(NET) 인증제도가 개선됐다. 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현실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편집자>



2008년 2월 정부조직이 개편됐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제도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통합되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관장하게 됐다. 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11.5.24 공포, 11.11.25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 시행일정에 맞춰 추가 연장, 수요자의 부담경감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효기간 추가연장 인증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 및 수입 대체 파급효과가 크고 인증 신제품의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추가 연장을 신설했다.

※ 현행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만 인정하였으나, 추가로 3년 연장 가능

2. 인증비용 경감 신제품 인증 신청서류 가운데 선행기

술조사서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여 인증 비용 절감 등 신청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했다.

※ 선행기술조사서를 발급받는 데 건당 약 50만원, 조사시간 약 2~3주 소요

3. 민원사전통지제도 인증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기를 잊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민원사전통지제도를 신설했다.

※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규정

4. 공공구매 지원요청 신제품 인증기업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증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공공구매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30일 이내 구매 여부를 지경부 장관에게 통보

5.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공공기관의 인증 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해당연도 구매계획의 제출기한을 1개월 앞당겼다. 그럼으로써 구매정보를 인증기업에 적기에 제공하여 판로 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게 했다.

※ 제출기한을 현행 3월말에서 2월말로 조정함

6. 공공구매 대상범위 공공 의무구매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인증기업간의 인증 신제품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 유발요인을 제거했다.

※ 공공기관의 인증 신제품 의무구매 비율 20% 적용대상을 조달청 물품 분류번호 및 인증규격이 같은 품목으로 명확히 규정함

7. 신제품 인증보유 현판 NEP 인증기업의 자긍심 고취

와 대외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나 공장에 '신제품 인증 보유기업' 현판을 걸어 홍보할 수 있도록 도안 요령을 신설했다.

※ 현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하고 신제품 명칭, 인증 번호, 유효기간 및 회사명을 표시

8. 기타 이외 인증기업의 인증 신제품 판매실적 제출시기 조정,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의 구체화 등 수요자를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 기업 회계감사를 고려하여 전년도 구매실적 제출시기를 1월달에서 2월달로 조정

개선 내용별 근거 및 관련 조문은 다음 표와 같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신제품 인증 및 공공구매 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참고하기 바란다. 3

개선내용	근거	조항
유효기간 3년 추가연장 (신설)	영 제20조제1항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수출 또는 수입단체 효과가 큰 제품일 것 2.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을 것
민원사전통지 제도 (신설)	영 20조 제5항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의무구매 대상분위 (개선)	영 제23조 제1항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을 말한다.
공공구매지원 요청 (신설)	영 제24조 제3항	제24조(인증신제품 구매 요청)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구매실적 및 계획 조기제출 (개선)	영제27조 제1항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 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기술술조사서 폐지 및 신기술성증명자료(개선)	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마.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바.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시.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아.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신제품 인증보유기업 현판 (신설)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③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거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다
인증신제품 판매실적 제출 (개선)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조(실적 제출 등) ① 인증 받은 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유효기간내의 인증신제품에 대한 연도별 판매실적과 자금지원이나 전시회 참여 등 지원받은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